

-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5. 10. 4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5. 10. 4

다. 상 정 일 자 :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95. 10. 12)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명종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지난 95. 5. 16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95. 5. 16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4조 제2항)에 공유재산중 취득, 처분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명시된 중요재산의 규정을 삭제(조례 제4조)
- 종전 전년도 12. 31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또는 필요시 추경예산 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조정되므로써 이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가 명시된 동 조례 관련조항을 개정 (조례 제37조)
-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공유재산에 한하여는 의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되, 이러한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 취득등의 경우 사전(사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통보)하도록 관련 조항신설 (조례 제37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요지

- 94. 12. 22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매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 의결을 득하도록 한 것은
 - 종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이 종료된 후인, 매년 12. 31까지 제출토록 하므로서 사실상 재산의 취득, 처분에 따른 예산 편성이 끝난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게 되므로서 형식에 거칠뿐 무의미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시기를 예산 편성 이전으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그간 의회에서도 제기되었던 사항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으며
 - 재산의 취득, 처분이 의무화되어 의회의 의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구 조례상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이 재산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재산의 변동사항 등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만큼 등 조례 제37조의 2를 신설하여 재산 취득시 사전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중요재산의 범위를 규정한 관련조항은 95. 5. 16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 구 예산으로 관사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상 3급관사까지 이며, 이중 2급 관사에 대하여는 현행조례상 건물유지 관리비, 보일러 운영비, 전화요금은 부담하고, 부담에서 제외되던 전기, 수도, 아파트 공동관리비에 대하여도 구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관사 제공의 취지가 관사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요경비는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현재 우리구에는 관사가 없습니다만 금후관사를 확보하게 될 경우 대비하여 전기, 수도요금 및 아파트의 경우 공동관리비도 구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의결